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916
----------	-------

발의연월일 : 2019. 11. 20.

발의자 : 강석진 · 함진규 · 박맹우
홍문표 · 추경호 · 권성동
김정재 · 황주홍 · 박덕흠
조원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산림레포츠시설”이 법률로 정의된 이후(법률 제13026호, 2015.1.20.) 종류 및 기준이 마련되어 산림 내에 조성·운영되고 있음. 숲길의 종류는 등산로,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로 구분(법률 제22조의2)되어 있으며,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등이 있음(시행령 제9조의4).

그러나 현재 숲길에 차마(車馬)(「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것,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을 말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등산로, 탐방로 등 보행자를 위한 숲길에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산림피해, 안전사고 및 등산객·지역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산림레포츠에 미 포함된 산악오토바이 등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레포츠의 경우에는 산림의 특성 상 안전사고 발생 및 등산객·지역주민·식생·토양·대기·수질·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은 게 사실임.

이에 따라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활동 등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진입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25조의2(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u> ① <u>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u></p> <p><u>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숲길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활동 등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진입할 수 있다.</u></p>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8조(과태료) ① ----- -----

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